제400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22. 10. 7. 제400회 정기회 국정감사)

병무청

위원별 목차

1. 성 일 종 위원 ····· 1

2. 송 옥 주 위원 ····· 29

3. 신 원 식 위원 ····· 37

4. 이 헌 승 위원장 ····· 51

국민의힘 성 일 종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성 일 종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BTS 내년도 월드투어 가능한가?〉

1-1. BTS는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 5개와 버터라는 노래도 10주간 1위, 빌보드어워드, 어메리칸뮤직어워드 수상 등 무수한 업적이 있지만, 그 업적만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주자는 것이 아님. 제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며, 백인들의 전유물인 그래미어워드에서 BTS가 수상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1-2. 예술·체육요원제도 등 대체복무제도(보충역) 축소에 대한 입장은?

1-3. 현재 전환복무(의경, 의무소방), 보충역(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을 대체해서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인원은 얼마인가?

1-4. 병역이행의 공정성 얘기하시는데, 클래식 분야와 대중예술 분야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1-5.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프랑스 올림픽에 브레이크댄스가 종목으로 포함됨. 여기에서 우승하면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음. 결국 병역특례 여부를 타국가의 아시안게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됨. 브레이크댄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상

대중문화 예술인에 해당되는데, 대중문화 예술인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1-6.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편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설득력이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1-7. 현재 정부에서 BTS를 군대에 보내되, 해외공연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8.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 유럽까지 거치는 대규모의 월드투어를 돌아야 하는데, 과거 BTS의 월드투어 스케줄을 보면 기간이 7~8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군 복무 중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1-9. 현재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입니다. 월드투어 한번만 돌아도 복무기간의 3분의 1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런 군 복무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10. BTS가 군 복무 중에 해외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군 복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외 스케줄에도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둘 다 똑바로 못하는 이런 군 복무를 왜 시키려 하십니까?

1-11. K-POP 최고의 스타인 BTS만 유독 월드투어 스케줄을 잡지 못하고 있음. 가장 큰형인 JIN의 군 입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입니까?

1-12. 더 늦기 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복무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이 늦어질수록 BTS의 다음 월드투어와 신보 발매가 늦어지게 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임.
청장님의 견해는?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내실화 및 복무부실 예방 교육 강화해야〉

3-1. 최근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산업지원인력의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파악하고 있는지?

3-2. 산업지원인력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은 내실 있게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3.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편입 취소 시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복무 관련 각종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3-4. 앞으로 병역지정업체 등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을 당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복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람.

〈국가에 충성, 국민에 봉사해도 명예롭지 못한 사회복무요원〉

4-1. 3대 가족 중 한 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면 병역명문가가 될 수 없는지?

4-2. 사회복무가 명예롭지 않고, 현역복무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4-3. 사회복무요원들은 21개월 동안 사복 입은 이등병으로 살아가면서 국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4.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개월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음에도 돌아오는 건 편하게 보냈네, 군대보다 편하지 않느냐?”라는 차가운 시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 사회복무요원 헌장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4-6.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현역과 같이 조국의 부름을 받은 대한의 남아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4-7.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4-8. 2021년도 병역명문가 미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총 112가문이 보충역이라는 사유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4-9. 물론 현역병에 비해 육체적 힘듦은 덜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겪게 되는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상상 이상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4-10.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현역입영이 어려운 청년들이 대상이지만, 누구보다도 주어진 병역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명문가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지하철역 등 민생안전 분야 배치 시급〉

5-1.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가 7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5-2. 최근 혼자 순찰을 하다 참변을 당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보듯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역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 관리에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21년 기준으로 14,485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도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들을 민생안전 분야에 추가 배치할 수는 없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강 확립 필요〉

6-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이 빈번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6-2. 사회복무요원의 지각이 전체 복무의무 위반의 53%에 달하는데, 지각이 빈번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6-3. 빈번한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을 병무청장은 모색해야 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7-1. 201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의 폭증을 이유로 병무청이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함. 이에 병무청은 2021년 1월부터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권익위의 지적 전에는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를 왜 만들지 않고 있었나?

7-2. 권익위가 지적하기 전에는 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민원이 없었나?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관련 권익을 챙겨줘야지, 권익위의 지적 후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 만든 것은 부끄러운 일.

7-3.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가결 2건)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을 통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은 경우가 발견됨. 복무기관 재지정을 부결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 인정 및 만족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함.

7-4. '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 질 의 1-1

BTS는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 5개와 버터라는 노래도 10주간 1위, 빌보드어워드, 어메리칸뮤직어워드 수상 등 우수한 업적이 있지만, 그 업적만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주자는 것이 아님.

- 미래를 보자는 거임. 제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임.
- 백인들의 전유물인 그래미어워드에서 BTS가 수상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답 변

○ 위원님 말씀대로 BTS로 인한 한류 열풍, 경제적 유발효과는 분명 대단한 일이나, 그에 대한 '보상'이 '병역특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며,

○ 엄청난 인기와 부를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BTS에게 '병역특례'까지 부여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의 차별, 괴리감,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질 의 1-2

예술·체육요원제도 등 대체복무제도(보충역) 축소에 대한 입장은?

△ 답 변

○ 병역자원 감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 의 1-3

현재 전환복무(의경, 의무소방), 보충역(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을 대체해서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인원은?

△ 답 변

○ 현재(8월말 기준) 94명(예술 73명, 체육 21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 질 의 1-4

병역 이행의 공정성 얘기하시는데, 클래식 분야와 대중예술 분야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 답 변

○ 클래식 분야와 대중예술 분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편입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더 많은 젊은이들과의 공정성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질 의 1-5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프랑스 올림픽에 브레이크댄스가 종목으로 포함됨. 여기에서 우승하면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어 결국 병역특례 여부를 타국가의 아시안게임위원회가 결정하게 됨. 브레이크댄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상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되는데, 대중문화 예술인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답 변

○ 현재 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아시아경기대회 브레이크 댄스 우승자는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령 상의 아시아경기대회 우승자로 봐야합니다.

▲ 질 의 1-6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편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설득력이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금년 9월 이후 8회에 걸쳐 7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6회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 20대의 응답은 7회의 조사에서 반대*가 높게 나타났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넥스트위크 리서치(9.1.), 조원씨앤아이(9.4.), 알앤써치(9.3.) 등

▲ 질 의 1-7

현재 정부에서 BTS를 군대에 보내되, 해외공연을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답 변

○ 국방부는 '부산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대외행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 질 의 1-8 ~ 9

1-8.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 유럽까지 거치는 대규모의 월드투어를 돌아야 하는데, 과거 BTS의 월드투어 스케줄을 보면 기간이 7~8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군 복무 중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1-9. 현재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입니다. 월드투어 한번만 돌아도 복무기간의 3분의 1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런 군 복무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답 변

○ 군 복무하기 전에는 월드투어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군 복무 중에 개인 영리 목적의 월드투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부산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대외행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 질 의 1-10 ~ 11

1-10. BTS가 군 복무 중에 해외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군 복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외 스케줄에도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둘 다 똑바로 못하는 이런 군 복무를 왜 시키려 하십니까?

1-11. K-POP 최고의 스타인 BTS만 유독 월드투어 스케줄을 잡지 못하고 있음. 가장 큰형인 JIN의 군 입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입니까?

△ 답 변

○ 사익 목적의 장기 해외 공연이 아니라,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위한 단기 공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개인의 상업적 성공, 국부에 기여한 점을 병역이행에 반영할 경우, 병역의무자 개인별 경제적 가치 생산 능력을 따져서 병역의무를 부과해야되는 또 다른 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질 의 1-12

더 늦기 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복무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이 늦어질수록 BTS의 다음 월드투어와 신보 발매가 늦어지게 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임. 청장님의 견해는?

△ 답 변

○ 과거 시행령 개정으로 월드컵 및 WBC 국가대표를 보충역에 편입시킨 적이 있으나, 이후 다른 종목과의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와 체육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2007년에 시행령 재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 또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또다시 시행령 개정으로 한다면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병역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질 의 3-1

최근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산업지원인력의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 질 의 3-2

산업지원인력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은 내실 있게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변

○ 철저한 현장방문 조사 등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기법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실태조사관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 질 의 3-3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편입취소 시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복무 관련 각종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답 변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규정 및 부당노동·권익침해 등 위반 행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교육 및 알림톡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위반행위 한 경우 : 30일 이내 신고 시 불이익 받지 않음.

○ 아울러, 지방청별로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권익보호 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고충신고 접수 시 철저히 조사·조치하여 근로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질 의 3-4

앞으로 병역지정업체 등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을 당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복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답 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방병무청별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근로권익 보호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질 의 4-1

3대 가족 중 한 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면 병역명문가가 될 수 없는지?

△ 답 변

○ 예, 없습니다.

▲ 질 의 4-2

사회복무가 명예롭지 않고, 현역복무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 답 변

○ 사회복무요원들도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의 4-3

사회복무요원들은 21개월 동안 사복 입은 이등병으로 살아가면서 국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 변

○ 예, 그렇습니다.

▲ 질 의 4-4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개월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음에도 돌아오는 건 편하게 보냈네, 군대보다 편하지 않느냐?”라는 차가운 시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변

○ 현역과 비교하여 일부 그러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 사회복무요원들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성실복무를 하고 있으며, 선행사례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질 의 4-5

사회복무요원 헌장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답 변

○ 예, 알고 있습니다.

○ 내용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입니다.

▲ 질 의 4-6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현역과 같이 조국의 부름을 받은 대한의 남아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 **답 변**

○ 예, 그렇습니다.

▲ 질 의 4-7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답 변**

○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까지 포함된다면 병역명문가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 질 의 4-8

2021년도 병역명문가 미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총 112가문이 보충역이라는 사유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답 변**

○ 예, 그렇습니다.

▲ 질 의 4-9

물론 현역병에 비해 육체적 힘듦은 덜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겪게 되는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상상 이상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답 변

○ 간혹 그런 경우는 있겠으나, 전체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 및 예방을 위해 교육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 복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4-10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현역입영이 어려운 청년들이 대상이지만, 누구보다도 주어진 병역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명문가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질의 7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질 의 5-1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가 7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답 변

○ 출생율 증가로 '11~'16년 병역자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과다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20세 남자인구 : ('10년 이전) 32～35만 명, ('11～'16년) 36～38만 명

○ 그간 소집적체 해소를 위하여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를 확대하고,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보충역 공급 감축을 추진하여 소집적체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20년을 기점으로 장기대기 처분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범정부 차원 수요 확대 추진으로 '19년부터 3년간 총 1만 5천명 추가 배치
- 병역판정검사규칙 일부 개정 및 병역처분기준 조정으로 보충역 처분인원 축소

○ 다만,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하여 소집적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군부대 비전투분야에 활용하는 등 수요를 확대하고,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보충역 공급을 축소하여 소집적체를 조기에 해소하는 등 장기대기 처분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질 의 5-2

최근 혼자 순찰을 하다 참변을 당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보듯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역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21년 기준 14,485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들을 민생 안전 분야에 추가 배치할 수 없나?

△ 답 변

○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며,

○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배정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22년 서울교통공사의 배정인원은 1,139명으로 현재 1,450명이 복무 중입니다.

○ 병무청은 민생안정 분야 등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의 6-1~3

6-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이 빈번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6-2. 사회복무요원의 지각이 전체 복무의무 위반의 53%에 달하는데, 지각이 빈번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6-3. 빈번한 복무 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행태 개선하는 방향을 병무청장은 모색해야 함.

△ 답 변

○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및 지각 등은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20대인 점과 출·퇴근하는 복무 특성 등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 이들에 대하여는 복무지도교육, 복무지도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복무의무 위반은 총 복무인원의 각 1.3% 및 1.6% 수준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율 및 복무의무 위반률 추이(복무인원 대비)

- 복무 이탈율 : ('20년) 1.5% → ('21년) 1.4% → ('22. 7월) 1.0%
- 복무의무 위반률 : ('20년) 2.1% → ('21년) 1.6% → ('22. 7월) 1.1%

○ 향후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행태 개선을 위하여 맞춤 복무관리와 교육을 강화하여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7-1

201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의 폭증을 이유로 병무청이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함. 이에 병무청은 2021년 1월부터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권익위의 지적 전에는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 왜 만들지 않고 있었나?

△ 답 변

○ 권익위의 지적 전에는 재지정 부결자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 질 의 7-2

권익위가 지적하기 전에는 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민원이 없었나?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관련 권익을 챙겨줘야지, 권익위의 지적 후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 만든 것은 부끄러운 일.

△ 답 변

○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이전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제도를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의 7-3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가결 2건)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을 통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은 경우가 발견됨. 복무기관 재지정을 부결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 인정 및 만족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함.

△ 답 변

○ 복무기관 재지정 민원 처리 시 거주지 이동, 질병 등 출원 사유별로 재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또한, 재지정 이의신청 시 현지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 사실조사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7-4

'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 답 변

○ 병무청 및 복무기관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병무청) 복무기본교육 및 실태조사/(복무기관) 월 1회 이상 직무수행 교육

○ 참고로 복무기관 재지정 민원이 부결된 사회복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 옥 주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송 옥 주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 증가 대안 마련해야〉

1.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만에 무려 3.3배가 증가하였는데 2018년에는 재외동포법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국적이탈자가 늘어서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2020년 이후인 최근에 이렇게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병무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단순히 세계화 글로벌화되고 있으니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매우 단순하고 별거 아닌 듯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늘어서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늘고 있는지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힘드니깐 도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한 원인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반면에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10년 전과 큰 변함이 없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 답변대로 세계화 글로벌화되고 있으면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도 늘고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스티브 유(유승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였죠? 혹시 스티브 유처럼 강력하게 규제한 사례가 있어서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감소한 것은 아닙니까?

4.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도 스티브 유(유승준)경우와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사례를 만들면 감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열심히 마련해서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 질 의 1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만에 무려 3.3배가 증가하였는데 2018년에는 재외동포법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국적이탈자가 늘어서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2020년 이후인 최근에 이렇게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변

○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적이탈 증가는 21대 총선 및 대통령 선거 등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법무부 국적이탈 심사T/F 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2.10.3. 시사포커스 "한국국적 포기하는 아이들, 1만 9,311명...20세 이하 93%"

▲ 질 의 2

병무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단순히 세계화 글로벌화되고 있으니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매우 단순하고 별거 아닌 듯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늘어서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늘고 있는지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힘드니깐 도피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한 원인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답 변

○ 현행 국적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소위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국적이탈 할 수 있습니다.

○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 요소이므로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변경 후 국내에 입국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에, 김병주 위원님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변경 방지' 법안 및 강대식·김병기 의원님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3

반면에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10년 전과 큰 변함이 없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 답변대로 세계화 글로벌화되고 있으면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도 늘고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스티브 유(유승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였죠? 혹시 스티브 유처럼 강력하게 규제한 사례가 있어서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감소한 것은 아닙니까?

△ 답 변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티브 유와 같은 사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상실 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 경제활동 등을 하려는 사례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 의 4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도 스티브 유(유승준)경우와 같이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사례를 만들면 감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제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열심히 마련해서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 답 변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 활동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한 바 있으며,

* (종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변경자, 37세까지 제한
  (개선)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0세까지 제한('18. 5. 1.)

○ 현재, 김병주 위원님의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변경 방지' 법안과

○ 강대식·김병기 의원님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 원 식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신 원 식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대체복무제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1-1. 대체역 관련 헌법소원 요구 내용은 헌법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 않는가?

1-2. 대체역 제도 시행 2년 만에 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과 헌법소원 청구는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고 봄. 다만, 제도 시행 2년이 된 만큼 제도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으로 대체역 제도 정착을 위한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 바람.

〈대체역 심사위원회 효율적 심사제도 운영방안 강구 필요〉

2-1. 현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2. 효율적인 심사여건 조성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정원 축소 방안과 특정 직업에 편향되지 않는 위원 위촉 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 바람.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해소 대책 관련〉

3-1.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소집적체로 인한 장기대기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3-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가 일정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복무지도관 확충으로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

4-1.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업무는 무엇이며 복무지도관들의 업무가 과중 상태 아닌가?

4-2. 복무지도관 충원 및 복무지도관 분업화 같은 개선 대책의 필요성에 동의? 상세 개선 대책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 바람

〈병역명문가 제도 체계적 운영 필요〉

5-1.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병역명문가 선정에 대한 입장은?

5-2.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병역명문가 선정 이후 불명예 제대 시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5-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이후 계속 복무 중 불명예 제대 시 병역명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

5-4. 심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한 불명예 제대 시 병역명문가 미선정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미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역명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합당한가?

5-5. 병역명문가 사업의 사후관리 및 제도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질 의 1-1

대체역 관련 헌법소원 요구 내용은 헌법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 않는가?

△ 답 변

○ 현행 대체역 제도는 병역의 형평성, 현역병 사기, 국민 공감대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각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0년에 도입하였습니다.

○ 헌법소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질 의 1-2

대체역 제도 시행 2년만에 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과 헌법소원 청구는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고 봄. 다만, 제도 시행 2년이 된 만큼 제도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으로 대체역 제도 정착을 위한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 바람.

△ 답 변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현재 대체역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와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대체역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 기 간 : ’22. 7. 7. ~ ’22. 12. 4.
- 내 용 : 외국 대체복무제도 경과 분석 및 현행 제도 발전방안

▲ 질 의 2-1

현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답 변

○ ’20년 개원 초기 편입신청 집중과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조사와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의 위원 수가 너무 많아 심의 시 효율적인 운영 및 심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질 의 2-2

효율적인 심사여건 조성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정원 축소 방안과 특정 직업에 편향되지 않는 위원 위촉 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 바람.

△ 답 변

○ 효율적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천기관 조정, 추천기관별 추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내년 6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은 특정 직업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추천기관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질 의 3-1~2

3-1.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소집적체로 인한 장기대기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3-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가 일정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 답 변

○ 그간 소집적체 해소를 위하여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를 확대하고,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보충역 공급 감축을 추진하여 소집적체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20년을 기점으로 장기대기 처분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범정부 차원 수요 확대 추진으로 '19년부터 3년간 총 1만 5천명 추가 배치
- 병역판정검사규칙 일부 개정 및 병역처분기준 조정으로 보충역 처분인원 축소

○ 다만,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하여 소집적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군부대 비전투분야에 활용하는 등 수요를 확대하고,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보충역 공급을 축소하여 소집적체를 조기에 해소하는 등 장기대기 처분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질 의 4-1~2

4-1.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업무는 무엇이며 복무지도관들의 업무가 과중 상태 아닌가?

4-2. 복무지도관 충원 및 복무지도관 분업화 같은 개선 대책의 필요성에 동의? (상세 개선 대책 마련해 의원실 보고 바람.)

△ 답 변

○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현재 105명입니다.

<복무지도관 현황>

('22. 8.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22. 8월	'21년	'20년	'19년	'18년
복무지도관수	105	103	99	99	97
복 무 인 원	58,209	57,769	56,306	60,698	57,675
1인당 관리인원	554	560	569	613	598

○ 복무지도관의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은 '18년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약 300명이나 현재는 55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무지도관 인원으로는 관리인원 과다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18년 연구용역「사회복무제도 운영 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
- 연간 법정근로시간(1,968시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은 300명 수준

○ 이에 복무지도관 정원증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24년까지 자체 인력조정 등을 통하여 10명 증원 예정입니다.

○ 또한 ’21년부터 시작한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전담 고충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별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전문 정신건강상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질 의 5-1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병역명문가 선정에 대한 입장은?

△ 답 변

○ 병역명문가 사업의 본래 취지는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3대 가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18~21개월 현역복무를 마친 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 의 5-2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병역명문가 선정 이후 불명예 제대 시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 답 변

○ 질의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질 의 5-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이후 계속 복무 중 불명예 제대 시 병역명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

△ 답 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행사 후 보완 사항에서 식별하였으며,

○ 선정 이후 불명예제대 등을 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현역 근무 중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불명예제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발 취소됨을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질 의 5-4

심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한 불명예 제대 시 병역명문가 미선정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미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역명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합당한가?

△ 답 변

○ 질의 3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질 의 5-5

병역명문가 사업의 사후관리 및 제도보완 방안 마련 필요

△ 답 변

○ 예, 알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헌 승 위원장

답 변 서

▲ 질의위원 : 이 헌 승 위원장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확충, 병역법 시행령 개정 촉구〉

1-1.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전환·대체복무 지원 인력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원 요청을 거절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병무청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결정한 근거는「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은 유사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과 다르게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 소지 및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수급의 발목을 잡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개정 검토가 필요

1-2.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을 최소 200인 이상으로 확충하는 방안 강구

〈지방병무청마다 다른 평발 판정, 표준화 및 통일화 필요〉

2-1. 최근 지방병무청마다 평발 및 족부변형에 대한 진단결과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음

* 족부 체중부하 측면 방사선에서 순차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족부변형 진단을 위한 자동 랜드마크 식별 연구

해당 논문을 검토하고 제시된 해결방안을 적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

2-2. 본 위원이 지적한 족부변형 외에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측정법 및 측정습관의 차이로 결과가 다른 질병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질병을 파악하기를 바람.

2-3.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통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람.

〈폭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대책마련 시급〉

3-1.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가 실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2021년 6월 23일 개정함. 이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비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가 대폭 증가하고 2년간 승선한 후 편입을 취소해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해 복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병무청도 이를 인지하고 단기적

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으로는 편입취소자 지속 증가 시 병역법 개정을 대책으로 내세움. 그러나 열악한 선박 근무환경이 확실하게 개선된 이후 법 개정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승선근무예비역 처우와 열악한 선박 근무환경 개선방안은?

3-2. 폭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부실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개선 촉구〉

4-1.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전역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부실함이 드러남. 전역자의 34%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 복무 한 것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입대 전 받은 기술훈련과 연계되지 않은 특기로 복무를(41.6%) 했다고 응답함. 각 군과 협조를 통해 복무자가 기술훈련과 연계된 군 특기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2. 전역 후 취업자(49.6%)보다 미취업자(50.4%)가 많았고 취업자 중에서도 42.9%는 군복무 기술 특기와 관련되지 않은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취업자 비율은 우리나라 20세~29세의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제도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움. 고용부,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졸자 채용기업 확대와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이용한 수요자들이

전역 후에도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4-3. 앞으로 복무자·전역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역자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민방위 착오 편성, 법령 및 시스템 정비 필요〉

5.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① 민방위 관련 법령 및 '새올행정시스템' 정비, ② 민방위 편성 관련 민원 안내에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 착오 편성으로 인한 국민의 혼선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BTS 병역문제, 국민여론 적극 반영 필요〉

6. BTS의 병역문제에 대해 국위선양,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한 병무청의 입장 재검토 필요

▲ 질 의 1-1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원 요청을 거절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병무청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결정한 근거는「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은 유사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과 다르게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 소지 및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의 발목을 잡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개정 검토가 필요

△ 답 변

○「병역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군 인력수급을 조정·통제하는 국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1-2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을 최소 200인 이상으로 확충하는 방안 강구

△ 답 변

○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병역 자원의 감소로 인한 보충역 제도를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에 소요 증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중방역수의사 운영방안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 질 의 2-1

최근 지방병무청마다 평발 및 족부변형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음

* 족부 체중부하 측면 방사선에서 순차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족부변형 진단을 위한 자동 랜드마크 식별 연구

해당 논문을 검토하고 제시된 해결방안을 적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

△ 답 변

○ 지방병무청별 편평족 등의 진단 결과 차이는 지역별 유병률, 측정방식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19년부터 편평족 등 측정 촬영법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통증 등 불편감을 호소한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논문은 연구자가 '22년 9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연구를 통해 편평족 측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편평족을 측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랜드마크(표식)를 영상으로 촬영 후 인공지능으로 학습 ⇒ 이후에 인공지능 모델이 처음 본 영상의 랜드마크를 추론한 결과 다른 임상의사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임

○ 다만, 이 논문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임상적인 활용사례 확인 및 기술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질 의 2-2

본 위원이 지적한 족부변형 외에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측정법 및 측정습관의 차이로 결과가 다른 질병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질병을 파악하기를 바람.

△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평족과 같은 유사한 사례를 파악한 결과 발목관절 이상, 고혈압, 굴절이상 등의 질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질 의 2-3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통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람.

△ 답 변

○ 그동안 편평족, 발목관절 이상, 고혈압, 굴절이상 등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검사방법 표준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편평족 등 검사방법 표준화 사례(예시)

구분	종전	표준화
편평족	-	· 촬영방법 표준화
발목관절 이상	-	· 촬영방법 표준화
고혈압	· 사례 1) 7급 판정 →6시간 혈압검사 · 사례 2) 6시간 혈압검사 → 7급 판정 → 6시간 혈압검사	· 고혈압 재신체검사 대상은 바로 신체등급 7급 판정 → 6시간 혈압검사
굴절이상	· 사례 1) 병무청 자동검안기 측정 · 사례 2) 병무청 자동검안기 측정 + 서류보완	· 병무청 자동검안기 측정

* 고혈압 판정 등 10개 사례에 대한 표준화 시행('19. 1월)
* 편평족, 발목관절 검사 촬영방법 표준 매뉴얼 마련('19. 9월)

○ 향후에도 유사한 질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검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정확한 병역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3-1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가 실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2021년 6월 23일 개정함. 이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비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가 대폭 증가하고 2년간 승선한 후 편입을 취소해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해 복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병무청도 이를 인지하고 단기적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으로는 편입취소자 지속 증가 시 병역법 개정을 대책으로 내세움.
그러나 열악한 선박 근무환경이 확실하게 개선된 이후 법 개정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승선근무예비역 처우와 열악한 선박 근무환경 개선방안은?

△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매년 2회 이상 모바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권익침해 사실을 파악·처리하고 있으며,

○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1년부터 하선자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한 선박에 한정하여 필요 인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22년 병무청 고시에 반영하였고 ’23년부터는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만 승선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질 의 3-2

폭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해운업체에 대해 다음연도 인원배정을 우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 의 4-1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전역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부실함이 드러남. 전역자의 34%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 복무 한 것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입대 전 받은 기술훈련과 연계되지 않은 특기로 복무를(41.6%) 했다고 응답함. 각 군과 협조를 통해 복무자가 기술훈련과 연계된 군 특기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답 변

○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받은 기술훈련 분야와 입영 후 군 복무 보직이 연계되도록 각 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 향후, 기술훈련 분야와 군 복무 보직 연계가 낮은 특기에 대해서는 특기 분야를 재정비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질 의 4-2

전역 후 취업자(49.6%)보다 미취업자(50.4%)가 많았고 취업자 중에서도 42.9%는 군복무 기술 특기와 관련되지 않은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취업자 비율은 우리나라 20세~29세의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제도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움. 고용부,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졸자 채용기업 확대와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이용한 수요자들이 전역 후에도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답 변

○ 우리 청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취업역량교육, 우수 중소기업 취업매칭, 취업박람회 참여 등 전역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률은 비슷한 연령의 일반 남성 청년의 고용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청년 고용률 비교 (단위 : %)

구 분	연령	’18년	’19년	’20년	’21년
통계청	20-24세(남성)	37.8	39.6	37.3	38.0
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52.9	56.0	57.7	57.6

○ 앞으로 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전역 후 관련분야 취업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질 의 4-3

앞으로 복무자·전역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역자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 답 변

○ 설문 문항의 간소화, 쉬운 용어 사용 등 만족도 조사 개선을 통하여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질 의 5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① 민방위 관련 법령 및 ‘새올행정시스템’ 정비, ② 민방위 편성 관련 민원 안내에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 착오 편성으로 인한 국민의 혼선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답 변

○ 병무청은 민방위 편성에 필요한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총괄 부처로서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방위 편성 정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여 민방위 착오 편성 방지를 위해 법령, 시스템 정비 및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질 의 6

BTS의 병역문제에 대해 국위선양,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한 병무청의 입장 재검토가 필요

△ 답 변

○ 일부 여론조사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찬성 비율이 60% 수준으로 높았으나, 20대의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넥스트위크 리서치(9.1.), 조원씨앤아이(9.4.), 알앤써치(9.3.) 등

○ 또한,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동 사안 허용 시 여론조사가 병역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잘못된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 과거 월드베이스볼클래식('09년)이나 U-20 월드컵('19년)에서 준우승한 대표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찬성 비율을 보였으나, 실제 정책에는 미반영함.

* '09.3월 WBC 대표팀 체육요원 편입(군미필 4명) : 찬성 71%, 반대 24%
'19.6월 U-20 대표팀 체육요원 편입 : 찬성 59%, 반대 35%

○ 따라서 병역환경,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